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8-20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69183 압류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8. 5. 2.

판 결 선 고 2018. 6. 14.

주 문

1. 피고가 2016. 8. 29.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중 별지1 목록(첨부파일 포함)의 연번 1 내지 4 기재 각 체납 지방세 합계 1,273,355,490원에 기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1 목록(첨부파일 포함) 기재 각 세목명, 각 과세연도, 각 납세기한, 각 지방세액, 각 가산금 표시,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2016. 8. 30.[1] 원고 소유

1) '2016. 8. 29.'의 오기로 보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8-20

인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 신탁 및 신탁회사의 파산 등

1) 원고는 1995. 6. 29. B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를 위탁자 겸 수익자, B 주식회사를 수탁자로 하고, 신탁재산을 [redacted]시 [redacted]구 C 잡종지 27,308㎡와 그 지상에 신축하는 지하 4층, 지상 7층 규모의 D터미널 및 복합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고 한다)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1997. 8. 14. 및 2000. 11. 29.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B 주식회사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2003. 4. 25. 각 집합건물등기가 마쳐졌다.

3) B 주식회사는 2003. 6. 2. [redacted]지방법원 2003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이하 파산선고를 받은 B 주식회사를 '파산법인'이라고 한다), 파산관재인으로 E과 F이 선임되었다. 이후 파산관재인 E은 2004. 11. 29. 사임하였고, G가 2005. 1. 31. 파산법인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의 2005. 5. 9.자 채권압류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은 피고의 위임을 받아 2005. 5. 9. 원고가 체납한 총 6건의 지방세 합계 1,601,952,250원[납부기한 2001. 10. 31.부터 2004. 8. 31.까지, 별지1 목록(첨부파일 포함, 이하 같다)의 연번 2 내지 7 기재 각 체납 지방세, 이하 원고의 각 체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8-20

지방세를 별지1 목록 기재 각 연번으로 특정한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지 등으로 원고가 파산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채권압류'라고 한다), 이 사건 1차 채권압류통지서는 2005. 5. 12. 파산법인에게 송달되었다.

다.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의 2008. 2. 25.자 채권압류

1) 원고는 2006. 7. 20.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새로운 수탁자로 법무법인 H과 I를 선임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2006. 7. 21.부터 2006. 8. 17.까지 법무법인 H과 I 명의로 수탁자 경질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2008. 8. 21.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수탁자를 법무법인 H과 I로 변경하고,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새로운 수탁자들에게 이전하였음을 통지하였다.

3) 한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은 피고의 위임을 받아 2008. 2. 25. 원고가 체납한 총 4,766건의 지방세 합계 7,992,102,410원(납부기한 2001. 10. 31.부터 2007. 12. 31.까지, 별지1 목록의 연번 1 내지 4,766 기재 각 체납 지방세)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 등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2차 채권압류'라고 한다), 이 사건 2차 채권압류통지서는 2008. 2. 26. 법무법인 H에게 송달되었다.

라.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의 2013. 7. 8.자 채권압류

1) [redacted]지방법원 [redacted]지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2011. 10. 24. 위 법원 2011비단9호로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수탁자로 J을 선임하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8-20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J은 2011. 12. 21.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J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은 피고의 위임을 받아 2013. 7. 8. 원고가 체납한 총 12,681건의 지방세 총계 16,751,265,620원(납부기한 2001. 10. 31.부터 2012. 7. 31.까지, 별지1 목록 기재 각 체납 지방세가 모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총 7,922건의 체납 지방세 합계 10,475,662,750원도 포함되어 있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 등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3차 채권압류'라고 한다), 이 사건 3차 채권압류통지서는 2013. 7. 11. 수탁자 J에게 송달되었다.

마.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의 2016. 8. 29.자 압류처분

1) 원고는 2016. 7. 22. 이 사건 신탁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등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이 밝혀지자, 2016. 8. 29. 원고에게 재산이 없음을 이유로 이루어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위임을 받아 원고가 체납한 총 14,264건의 지방세 합계 19,310,539,910원(납부기한 2001. 10. 31.부터 2013. 9. 30.까지, 별지1 목록 기재 각 체납 지방세가 모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체납 지방세들도 포함되어 있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의 불복 등

원고는 2016. 1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기각되었고, 2017. 3. 31. 다시 경기도지사에게 지방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8-20

원고의 심사청구는 2017. 6.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2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가 체납한 각 지방세 중 납부기한이 2001. 10. 31.부터 2011. 7. 31.까지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지방세에 대한 피고의 지방세징수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위와 같이 시효로 소멸된 지방세징수권에 기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압류처분의 대상인 각 체납 지방세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피고의 위임을 받은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의 각 채권압류통지로 인하여 중단되었다. 설령 이 사건 2차 채권압류통지서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수탁자로서의 권한이 없는 법무법인 H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2차 채권압류통지서는 원고가 수탁자로 선임한 자에게 송달된 것이므로, 원고가 해당 체납 지방세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 관련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징수권의 시효 및 그 중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8-20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2항 및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 제1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결손처분을 할 수 있고,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며, 다만,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30조의5 제1항은 지방세징수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은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30조의6 제1항 제4호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하나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들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42조는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2) 별지1 목록의 연번1 내지 4 기재 각 체납 지방세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의 시효 소멸 여부

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체납한 별지1 목록의 연번 1 내지 4 기재 각 지방세(합계 1,273,355,490원)의 각 납부기한은 2001. 10.

2) 지방세징수권의 시효 및 그 중단 등에 관하여, 2010. 3. 31. 제정된 지방세기본법이 시행(2011. 11. 1.)되기 이전에는 구 지방세법 제30조의5, 제30조의6 등에서 규정하고 있었고, 지방세기본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40조 등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8-20

31.부터 2002. 10. 31.까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 각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이미 경과한 이후인 2016. 8. 29.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지방세징수권은 이 사건 압류처분이 있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항변의 요지

이 부분 지방세징수권은 시효로 소멸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1차 채권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2) 판단

(가)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신탁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은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임무는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수탁자의 파산관재인은 신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신탁법 제22조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이 신탁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수탁자의 파산관재인은 신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신탁재산을 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8-20

관하고 신탁사무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19788 판결 등 참조), 채권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금전의 지급 내지 의무이행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채권압류가 제3채무자에게 어떠한 관리처분권을 부여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제3채무자인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그 임무를 종료한 경우, 제3채무자인 수탁자에 대한 채권압류의 통지는 신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파산관재인에게 하여야만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파산법인은 2003. 6. 2. 파산선고를 받았고, 성남시 분당구청장은 피고의 위임을 받아 2005. 5. 9. 이 사건 1차 채권압류를 하였으며, 이 사건 1차 채권압류통지서가 2005. 5. 12. 파산법인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파산법인에게 이 사건 1차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할 당시 파산법인의 파산관재인으로 F과 G(2005. 1. 31. 선임, 2006. 5. 19. 사임)가 각 선임되어 있었던 사실, 성남시 분당구청장은 이 사건 1차 채권압류통지서를 파산관재인 F의 주소지(안양시 동안구 K)에도 발송하였으나, 이는 2005. 5. 13. 이사불명을 이유로 반송된 사실, 이후 성남시 분당구청장은 2005. 5. 17. 이 사건 1차 채권압류통지서를 F의 다른 주소지(서울 중구 L아파트 111동 302호)로 다시 발송하였으나, 위 통지서도 F에게 송달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을 뿐이며, 달리 이 사건 1차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파산법인의 파산관재인들에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1차 채권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1차 채권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8-20

은 이유 없다.

3) 별지1 목록의 연번 5 내지 4,766 기재 각 체납 지방세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의 시효 소멸 여부

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1 목록의 연번 5 내지 4,766 기재 각 지방세의 납부기한은 2003. 8. 31.부터 2007. 12. 31.까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 각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이미 경과한 이후인 2016. 8. 29.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2006. 7. 20.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새로운 수탁자로 법무법인 H과 I를 선임하였고, 2006. 8. 21. 성남시 분당구청장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수탁자를 법무법인 H과 I로 변경하였다고 통지한 사실, 이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2008. 2. 26. 법무법인 H에게 이 사건 2차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한 사실도 앞서 각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이 사건 2차 채권압류통지서가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수탁자로 선임된 제3채무자인 법무법인 H에게 송달되어 이 사건 2차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이 부분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법무법인 H과 I를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새로운 수탁자로 선임한 것은 무효이므로,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이 사건 2차 채권압류통지서를 법무법인 H에게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3채무자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8-20

볼 수 없어, 이 사건 2차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았다.

(2) 판단

(가)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파산법인의 파산관재인 M은 2006. 9. 11. 법무법인 H과 I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가합856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8. 22. 원고가 법원에 수탁자 선임 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법무법인 H과 I를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새로운 수탁자로 선임할 수 없고, 법무법인 H과 I가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그들 명의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신탁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파산관재인 M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한편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커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36091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임의로 법무법인 H과 I를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새로운 수탁자로 선임한 것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8-20

사건 2차 채권압류통지서를 법무법인 H에게 송달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은 원고로부터 법무법인 H과 I를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새로운 수탁자로 선임하였다는 통지를 받고, 이에 따라 이 사건 2차 채권압류통지서를 법무법인 H에게 송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파산법인의 파산관재인에게 이 사건 2차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가 성남시 분당구청장으로 하여금 원고의 체납 지방세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이 부분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별지1 목록의 연번 4,767 내지 11,099 기재 각 체납 지방세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의 시효 소멸 여부

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1 목록의 연번 4,767 내지 11,099 기재 각 지방세의 납부기한은 2008. 7. 31.부터 2011. 7. 31.까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 각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이미 경과한 이후인 2016. 8. 29.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2013. 7. 8. 이 부분 지방세징수권에 기하여 이 사건 3차 채권압류를 하였고, 2013. 7. 11. [redacted]지방법원 [redacted]지원 2011비단9호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수탁자로 선임된 J에게 이 사건 3차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한 사실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이 사건 3차 채권압류통지서가 법원에 의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수탁자로 선임된 제3채무자인 J에게 송달되어 이 사건 3차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이 부분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8-20

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J이 이 사건 3차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기 이전에 법원에 의하여 파산법인의 신탁재산관리인으로 N가 선임되었으므로, 이 사건 3차 채권압류통지서가 N에게 송달되어야만 이 사건 3차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3차 채권압류통지서가 N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았다.

(2) 판단

(가) 신탁법 제17조 제1항은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거나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신탁재산관리인은 선임된 목적범위 내에서 수탁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신수탁자가 선임되거나 더 이상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는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신탁법의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한 신탁재산관리인은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수탁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질 뿐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수탁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나)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8-20

원이 이해관계인 O 등의 청구에 의하여 2012. 11. 30. 위 법원 2012비단3호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에 관하여 N를 신탁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3차 채권압류는 단지 제3채무자인 수탁자 J으로 하여금 이 부분 체납 지방세의 채무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이를 두고 수탁자인 J과 위탁자 겸 수익자인 원고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법원에 의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에 관하여 별도로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탁자인 J이 이 사건 3차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을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1)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 중 별지1 목록의 연번 1 내지 4 기재 각 체납 지방세 합계 1,273,355,490원에 기한 부분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지방세징수권에 터 잡은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지방세징수권에 기한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지방세징수권에 터 잡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압류처분 자체는 적법하고, 이 사건 압류처분이 있은 이후에 새로이 법정기일이 도래한 위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지방세를 상회하는 체납 지방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압류처분 전부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8-20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지방세기본법 제15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였을 경우,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사람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5062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적법하게 압류한 이후에 새로이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 지방세에 대해서도 기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일 뿐, 위법하게 이루어진 압류가 적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지방세징수권에 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이후 새로이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 지방세에 대하여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하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방세징수권에 기하여 위법하게 이루어진 압류처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승철

판사 인진섭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8-20

판사 권순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8-20

별지1

원고의 각 체납 지방세목록(일부)

연번	연도별	세목명	납기일자	세액합	가산금합	납부할 세액합
1	2001	종합토지세	2001.10.31	100,000	-	100,000
2	2001	종합토지세	2001.10.31	205,776,010	158,346,190	364,122,200
3	2001	종합토지세	2001.12.15	153,410,000	119,965,390	273,375,390
4	2002	종합토지세	2002.10.31	359,186,010	276,571,890	635,757,900
5	2003	주민세(법인균등)	2003.08.31	62,500	3,120	65,620
6	2003	종합토지세	2003.10.31	417,647,680	321,587,370	739,235,050
7	2004	주민세(법인균등)	2004.08.31	62,500	3,120	65,620
8	2004	종합토지세	2004.10.31	19,762,470	15,016,830	34,779,300
9	2005	구)재산세(건축물)	2005.07.31	258,930	12,930	271,860
10	2005	구)재산세(건축물)	2005.07.31	1,826,780	1,312,910	3,139,690
11	2005	구)재산세(건축물)	2005.07.31	960,400	544,200	1,504,600
12	2005	구)재산세(건축물)	2005.07.31	596,630	29,820	626,450
13	2005	구)재산세(건축물)	2005.07.31	171,810	8,570	180,380
14	2005	구)재산세(건축물)	2005.07.31	602,020	30,090	632,110
15	2005	구)재산세(건축물)	2005.07.31	864,260	489,590	1,353,850
16	2005	구)재산세(건축물)	2005.07.31	80,760	4,020	84,780
17	2005	구)재산세(건축물)	2005.07.31	80,760	4,020	84,780
18	2005	구)재산세(건축물)	2005.07.31	99,170	4,930	104,100
19	2005	구)재산세(건축물)	2005.07.31	748,150	37,380	785,530
20	2005	구)재산세(건축물)	2005.07.31	5,315,600	4,091,960	9,407,560
21	2005	구)재산세(건축물)	2005.07.31	80,200	3,990	84,190
22	2005	구)재산세(건축물)	2005.07.31	80,200	3,990	84,190
23	2005	구)재산세(건축물)	2005.07.31	80,200	3,990	84,190
24	2005	구)재산세(건축물)	2005.07.31	80,200	3,990	84,190
25	2005	구)재산세(건축물)	2005.07.31	69,750	3,460	73,210
26	2005	구)재산세(건축물)	2005.07.31	81,280	4,040	85,320
27	2005	구)재산세(건축물)	2005.07.31	65,790	3,270	69,060
28	2005	구)재산세(건축물)	2005.07.31	65,790	3,270	69,060
29	2005	구)재산세(건축물)	2005.07.31	79,260	3,940	83,200
30	2005	구)재산세(건축물)	2005.07.31	70,680	3,510	74,190
31	2005	구)재산세(건축물)	2005.07.31	69,210	3,440	72,650
32	2005	구)재산세(건축물)	2005.07.31	69,210	3,440	72,650
33	2005	구)재산세(건축물)	2005.07.31	69,750	3,460	73,210
34	2005	구)재산세(건축물)	2005.07.31	81,280	4,040	85,320
35	2005	구)재산세(건축물)	2005.07.31	65,790	3,270	69,060
36	2005	구)재산세(건축물)	2005.07.31	65,790	3,270	69,060
37	2005	구)재산세(건축물)	2005.07.31	79,260	3,940	83,200
38	2005	구)재산세(건축물)	2005.07.31	90,760	4,020	84,780
39	2005	구)재산세(건축물)	2005.07.31	64,250	3,190	67,440
40	2005	구)재산세(건축물)	2005.07.31	64,250	3,190	67,440
41	2005	구)재산세(건축물)	2005.07.31	65,670	3,270	68,940
42	2005	구)재산세(건축물)	2005.07.31	65,670	3,270	68,940
43	2005	구)재산세(건축물)	2005.07.31	65,670	3,270	68,940
44	2005	구)재산세(건축물)	2005.07.31	65,670	3,270	68,940
45	2005	구)재산세(건축물)	2005.07.31	65,670	3,270	68,940

첨부파일 포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8-20

별지2

압류 부동산 목록

연번	물건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8-20

연번	물건지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8-20

연번	물건지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8-20

연번	물건지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8-20

연번	물건지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8-20

별지3

관련 법령

■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2. 제73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9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3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결손처분)

① 법 제9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5(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이 절에서 "지방세징수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8-20

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6(시효의 중단 및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호의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중단된다.

1. 납부 또는 납입에 관한 고지
2. 독촉 또는 납입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 또는 납입기간
2. 독촉 또는 납입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제82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소멸시효의 기산일)

법 제30조의5 제1항 후단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의 다음날을 말한다. 다만,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입기한(납입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의 다음날을 말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8-20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의 다음 날로 한다. 다만,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의 다음 날을 말한다.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8-20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수탁자의 임무종료)

①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파산,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임무는 종료한다. 수탁자인 법인이 해산한 때도 또한 같다.

② 전항의 경우에 수탁자의 상속인, 법정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은 신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후존속하는 법인도 또한 같다.

제17조(신수탁자의 선임)

①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신수탁자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유언에 의하여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신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원은 선임된 수탁자에게 사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서 상당한 보수를 줄 수 있다.

제22조(수탁자의 파산과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 신탁법

제17조(신탁재산관리인 선임 등의 처분)

①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거나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다른 수탁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신탁재산관리인은 선임된 목적범위 내에서 수탁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8-20

제19조(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 종료)

① 신수탁자가 선임되거나 더 이상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는 종료된다.

■ 구 파산법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 (관리 및 처분)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끝.